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11. 6.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0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5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8. 11. 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신 귀 철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함. (안 제8조)
-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97. 8. 22.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98. 2. 24. 대통령령 제15681호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98. 9. 25.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동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규제는 강력히 억제하며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철폐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자율성을 증진하고 부정과 비리를 일소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2인으로 규정한 반면,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이 명시되지 않은 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조례안에 구의원 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도 동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되나, 동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장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의 의결권 과 가부동수일 경우 가·부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후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설치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및 발의자 : '98. 11. 6. 이 매 숙 위원외 1

나. 수정이유 :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위원구성 조문을 일부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과" 를 "4급이상 공무원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로 수정함. (안 제3조제3항)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8. 11. 6.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과"를 "4급이상 공무원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로 수정함. (안 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중 “4급이상 공무원과”를 “4급이상 공무원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구의회 의원 2인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고 한다) 4급이상 공무원과 아래 각호의 10에 해당하는 구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제3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_____ _____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인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98. 1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규제 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 개혁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 센터를 설치함.(안 제8조)
- 라.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1998·2·28 법률 제5529호) 제3조제3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81호) 제17조
내지 제29조
- 나. 예산조치 : 수당등 편성 필요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중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고 한다) 4급이상 공무원과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3.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4.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2명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